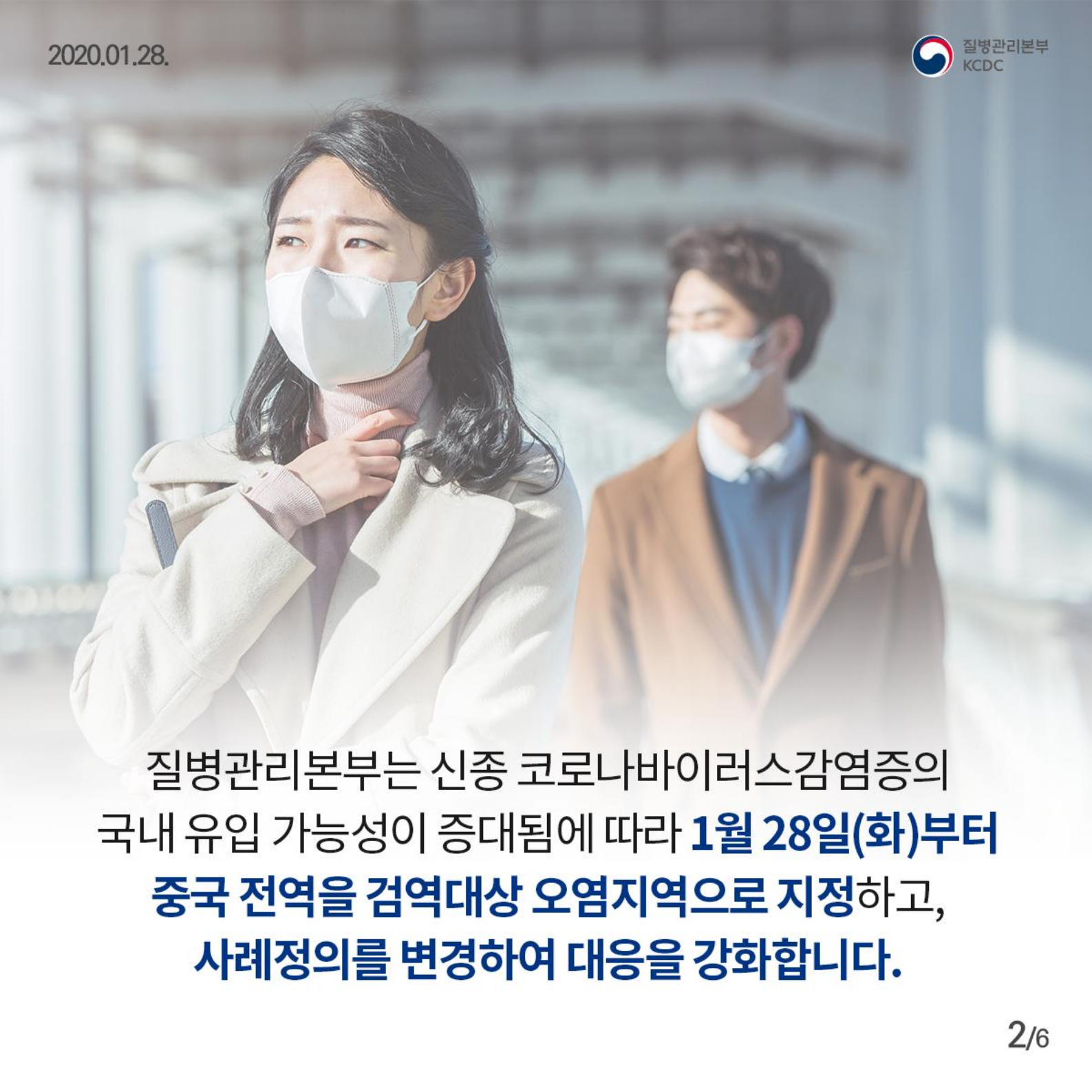
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

사례정의 확대 및 감시 강화

-중국 전역, 검역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 강화-

A photograph of a woman and a man walking outdoors. The woman in the foreground is wearing a white face mask and a light-colored coat, looking slightly to her right. The man in the background is also wearing a white face mask and a brown coat, looking forward. The background is a blurred outdoor setting with buildings.

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
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**1월 28일(화)부터**
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,
사례정의를 변경하여 대응을 강화합니다.

여기서 잠깐,

오염지역이란?

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
검역법 제5조에 따라
보건복지부장관(질병관리본부장)이 지정하는 지역

사례정의란?

**감염병 감시·대응·관리가
필요한 대상을 정의**하는 것
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
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

건강상태 질문서 (별첨)

성명	성별		<input type="checkbox"/> 남		<input type="checkbox"/> 여
국적	중년월일				
여권번호	도착 연월일				
신약·항균제· 열차·자율치명	차석번호				
한국 내 주소(보세우주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후사기 바랍니다)					
휴대전화(또는 한국 내 연락처)					
최근 14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.					
1)	2)	3)	4)		
최근 14일 동안에 이제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 해당란에 '나' 표시를 해 주십시오.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발열	<input type="checkbox"/> 오한	<input type="checkbox"/> 두통	<input type="checkbox"/> 인후통	<input type="checkbox"/> 콧물	
<input type="checkbox"/> 기침	<input type="checkbox"/> 호흡곤란	<input type="checkbox"/> 구토	<input type="checkbox"/> 복통 또는 설사		<input type="checkbox"/> 발진
<input type="checkbox"/> 환담	<input type="checkbox"/> 의식저하	<input type="checkbox"/> 감각·지각 소실 (눈, 코, 입 등)		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증상()	
위의 증상 중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항목 중 해당란에 '나' 표시를 해 주십시오.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증상 관련 약 복용		<input type="checkbox"/> 현지 병원 방문		<input type="checkbox"/> 통원 검측	
해당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'증상 없음'란에 '나' 표시를 해 주십시오. <input type="checkbox"/> 증상 없음					
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「감염법」 제12조 및 제3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					
작성인은 위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			
작성일		년		월 일	
작성인		(서명 또는 인)			
국립검역소장 귀하					

KDCM-X2020-01-0001(2020.1.28)

**향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
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고
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해 주세요!**

변경 전 (제 3판)
변경 후 (제 4판)

▶ 의사환자(Suspected Case)

1. 최근 14일 이내

우한시 방문

→ 후베이성 방문

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

→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

▶ 조사대상유증상자(Patient Under Investigation, PUI)

2. 최근 14일 이내

우한시를 다녀온 후
발열과 호흡기증상

→ 중국을 다녀온 후
폐렴*

또한, **국내 환자 신고·대응·관리를 위한 사례정의***도 변경됩니다.

***사례정의:** 감염병 감시·대응·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

후베이성(우한시 포함) 방문자는 **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**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



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**마스크 착용**
(선별진료소 방문 시 반드시 착용!)



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
선별진료소, 관할보건소, 1339 문의



중국 여행력을 **의료진에게 알리기**

**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조기 발견 및
확산 차단**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
동참과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!